

효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

—호혜성 및 공정성을 중심으로—

Historical Review on Filial Piety Norm

—focus on Reciprocity and Fairness—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성미애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옥선화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h.D. Course : Sung Mi-Ai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Ok, Sun Hwa

〈목 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ate filial piety norm based on reciprocity and fairness. For this goal, we reviewed literature related to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situations, centered on the middle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major results can be summerized as follow: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arent generation and the married adult children generation changed according to the context of particular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conditions, so filial piety norm must also change paced along with social change. Therefore, the concepts of reciprocity and fairness has been an important one which maintains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generation and the married adult children generation. So in general, we think it is reasonable

* 본 논문은 1997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to draw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reciprocity and fairness principle between the parent generation and the married adult children generation.

1. 서 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인구유형은 가족계획사업의 추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현격히 낮아지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절대 수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¹⁾.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가는 인구노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주기상 확대된 노년기를 행복하고 안락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과거 어느 때보다 노년기가 장기화되어 전 생애의 생활의 질을 측정할 때에도 이 시기의 생활만족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된 노인생활상도 제시되지 못한 채 노년기의 부양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노령화 현상은 가족관계 측면에서 볼 때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지속년수를 증가시켜 과거 어느 때보다 부모부양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기혼자녀세대의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책임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부모부양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중간세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혼자녀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 두고서 조선중기 이후에 강조해 온 성리학적 효규범을 마치 오천년 동안의 미풍양속인 것처럼 강

조하면서, 노인문제를 사회적 과정보다는 개인주의 화라는 개인도덕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장경섭, 1992). 이러한 상황에서 성리학적 효규범은 푸코가 말하였듯이 더 이상 정당성의 증명을 요구받지 않는 진실이라는 무게를 담게되면서(조형, 1996에서 재인용),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권장해야 하는 도덕규범으로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규범상으로는 효규범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독립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효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노인세대에게 피부양자라는 의존적인 위치를 전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을 받는 노인세대나 부양을 해야 하는 기혼자녀세대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세대를 중심으로 피부양만족도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김미겸, 임종권, 1982; 성미애, 1991; 손선경, 임정빈, 1985; 윤종주, 1983)이나 부양을 담당하는 기혼자녀세대를 중심으로 부양의무나 부양부담감을 조사한 연구들(성미애, 1991; 임춘희, 198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을 보면, 부모세대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일방적인 부양만을 받는 의존적인 위치가 부담스럽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양을 담당하는 기혼자녀세대는 이후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기혼자녀세대는 의존하는 아동기, 청년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며, 더욱이 자녀의 교육수준이 사회에서의 지위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부양에 과중한 책임을 갖게되었다.

이러한 오늘날의 우리사회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효규범을 자연적인 감정의 발로로만 볼 것이

1)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해 60세 이상 노인의 부양비가 1966년에는 10.1이었으나 1990년에는 11.5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거의 3배인 30.2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된다(김익기, 1995).

아니라 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일면으로 보면서 역사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 뒤 오늘날에 맞는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 규범을 고려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역사학자들이 집단성원간에 이루어지는 원조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던 호혜성 및 공정성의 개념(Finch, 1989: 162)에 입각해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 규범인 효규범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떠한 관계 규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범이 변동되는 과정을 시대상황과 관련해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옥선화, 1989)고 보고서,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제조건에 따라서 효규범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특히 전통사회의 성리학적 효규범은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고, 오늘날에도 과연 적용 가능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농경제체와 산업체제라는 상이한 사회경제체제에서 효규범이 개인의 인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펴봄, 이러한 배경에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에서 호혜성 및 공정성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 규범으로 강조하는 농경사회의 성리학에 기반한 효규범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서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효규범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며,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부모-기혼자녀세대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

적, 문화적 제조건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자 가족제도사 및 사회경제사 관련 문헌을 살펴보는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사, 특히 사료가 매우 빈곤한 고대, 중세의 친족·가족사 연구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인접시기, 시대와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역사, 사회맥락적 접근법이 바람직하다는 최재석의 입장(최재석, 1989: 11-12)에 따라서, 2차사료를 통해 사회적 맥락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역사적 연구에서 시대구분 문제는 길고 복잡한 인간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과학적인 역사인식의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44)으로, 현재 여러 가지 시대구분 유형²⁾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에서 작용하는 호혜성 및 공정성의 양상은 가족관계 규범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보고서, 우리나라 가족제도사 및 사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이광규, 1990; 최재석, 1983)의 견해에 입각해서 17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먼저 구분하며, 17세기 중엽 이후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일제시대, 광복 등 역사적 맥락에서 큰 사건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농업경제체제가 점차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광복이 한국현대사에서 갖는 의미와 광복이후부터 서구사회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일제식민지 시대까지를 한 시기로 구분하고, 다음 광복이후 현재까지를 또 한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호혜성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본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 정의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는 혈연에 근거한 관계

2) 기존 학자들의 시대구분론은 크게 시간의 원근에 의한 시대구분, 사회발전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 민족의 성장과정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 주제별에 의한 시대구분, 사회발전과 왕조를 혼합한 시대구분, 지배세력의 변화에 따른 시대구분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한국경제사학회, 1991: 6-10).

로, 호혜성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대안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한편의 사망없이 는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관계 해소를 막는 내부적, 외부적 장벽이 상당히 강한 교환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의 호혜성이 실현되지 않을 때에도 관계가 해제되지는 않지만, 관계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Johnson, 1988)는 사실에서 볼 때, 다른 어떤 관계보다 호혜성 및 공정성에 입각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는 Ekeh가 주장한 것처럼 쉽게 비교가 가능한 2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간 비교가 여의치 않는 다수집단에서의 교환원리인 이익극대화 원리 보다는 호혜성 및 공정성의 원리가 작용함으로써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Ekeh, 1974; 김모란, 1994에서 재인용).

그런데 굴드너는 이러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그들의 가치에 대비해서 볼 때 공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관계의 균형을 가져오는 어떤 규범적인 압력이 있다(1973: Finch, 1989: 163에서 재인용)고 주장하였다. 즉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의 원리는 사회체제와 개인의 욕구를 집단적으로 충족시키는 사회규범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Lévi-Strauss 같은 학자는 개인의 행위는 규범과 제재의 형태를 갖는 사회체제의 목적에 의해 조정된다고 보았다(Sabatelli & Shehan, 1993: 386).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를 규제하는 그 사회의 효규범이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관계 규범이 될 수 있는가는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한 시대의 효규범을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를 간과하고서 오늘날에도 전통사회의 미덕으로 강조하는 것

은 무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호혜성 및 공정성을 중심으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사회에서 강조하는 효규범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고서, 17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일제시대까지, 그리고 광복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고서 현재 강조하는 성리학적 효규범과 각 시대의 효규범을 대비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17세기 중엽 이전까지의 효규범에 대한 고찰

고대사회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에서 보여지는 호혜성 및 공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서민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밀착된 열려진 책(김일명, 이정덕, 1996)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유사]에는 효와 관련되는 내용이 孝善의 장³⁾에 나타나 있는데, 효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포상을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즉 향득사지가 흉년 중父에게 다리 살을 베어 봉양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경덕왕이 곡식 50석을 상으로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늙은 母의 반찬을 먹는 어린 자식을 땅 속에 묻으려고 했을 때 鍾이 나온 사실이 알려져서 국가에서는 손순의 효를 칭송하여 집 한 채와 해마다 벼 50석을 포상물로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생산력에 비추어 볼 때 비용이 되는 부모에 대한 기혼자녀의 부양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물질적 보상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부모-자녀간 윤리를 살펴본 연구(김일명, 이정덕, 1996)에서도 자기희생적 효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효행을 한 효자, 효녀가 많지 않

3) 이 장에는 효와 관련되는 내용의 일화가 5편이 실려있는데, “진정스님의 효도와 선행이 모두 아름다움(眞定師 孝善雙美)”, “대성이 전세와 현세 부모에게 효도함(大城孝二世父母)”, “향득사지가 다리 살을 베어서 부모를 공양함(向得舍知割股供親)”, “손순이 아이를 땅에 묻음(孫順埋兒)” 등이 실려 있다.

으며, 실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에게 ‘포상’이라는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제공함으로써 부양관계를 보상을 산출하는 관계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포상’ 행위로 볼 때 부모부양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힘들며, 부담이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도 1년을 경작한 뒤에는 地力을 회복하기 위해 1년 내지 2년을 그대로 묵혀야 하는 토지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에서 보면, 삼국시대의 농업기술도 休閑農法 단계에 있었음이 분명하며(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105),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부모부양은 손순의 경우처럼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의 가족관계는 모간이 주장하였듯이 ‘완전히’ 정서적인 측면으로만 고려할 수는 없다(1975: Finch, 1989: 84에서 재인용)고 볼 수 있겠다.

또한 4세기 경에 고등종교인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는데, 이 불교신앙은 결코 폐쇄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전래 당시부터 무속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포섭(최병헌, 1986: 79-80)하였기 때문에 무리없이 생활원리를 제공하는 신념체계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효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려는 자연의 발로로 규정하기는 하지만 인연사상에 입각하여 가족내에서만 한정되는 윤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뻗어가는 경애를 강조하였으며, 자녀 일방의 의무가 아니라 인간적 평등한 입장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애도 강조(미치하타로슈, 1994: 63-64)하는 등 당시의 효규범의 내용은 성리학적 효규범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래 농경사회에서 성리학에 바탕을 둔 효규범이

사회지배의 원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과 가족의 同居同財의 원리가 지속되는 경제적 존립기반인 家産이 마련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박병호, 1976). 그러나 실제 고려사회에서도 가부장제 성립 기반이 되는 가족단위의 집약농업이 아니라 擧郡的, 擧縣的 조직인 香徒⁴⁾ 조직을 통해서 필요한 농업노동력을 제공하였다(이태진, 1986: 116).

따라서 가족노동에 의존하면서 가장의 지도 하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가부장제 가족이 등장하기 이전의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를 규제하는 효규범은 기혼자녀세대의 일방적, 의무적 성격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효규범과는 달리 상호적 성격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규범이 실현되는 배경에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는 호혜성 및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들어서면 정치적으로 무신란과 元의 압제라는 혼란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생산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고려말기 14세기부터 휴한농법이 극복되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耕地 전면에 肥培를 가하여 連作常耕하는 집약농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으로는 중앙집권체제, 가정적으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맹아가 되었다. 특히 농업기술 개발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의 경험적 처방에 의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 또는 강구에는 일정한 지식이 요청되므로 지식인의 역할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데(이태진, 1990: 34), 선진 강남농법⁵⁾을 수용하면서 등장한 신흥사족들이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신유학을 받아들이면서 고려사회와 상이한 사회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생산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는 부모-기혼자녀세대간 상호작용에도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4) 香徒는 본래 불교의 祀佛團體이지만 불교가 융성한 신라, 고려에서는 촌락사회의 구조와 성장에 밀착되어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이태진, 1986: 127).

5) 강남농법은 주로 수전농업에서 水利와 施肥의 기술에 일대 발전이 이루어져 휴경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편, 새로운 작법으로서 移秧法이 성립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이태진, 1989: 194).

그러나 농업기술은 자연조건상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그 도입과 활용에는 반드시 자연조건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태진, 1990: 76)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어떠한 신념체계가 이전의 신념체계와 상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대체하고 토착화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연유로 조선왕조 개창 후 약 1세기가 지날 무렵인 15세기 말엽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휴한을 극복하고 1년1작의 연작상경을 실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15세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중앙집권체계가 이루어졌다(이태진, 1990: 38). 이러한 배경에서 평등개념을 강조하는 불교와 상이하게 도덕 지상주의, 현세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이념체계의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君臣, 父子, 夫婦, 主奴, 君子와 小人, 그리고 華夷 관계와 같은 중세사회의 현실적 인간 질서는 모두가 자신의 사회적 分, 즉 명분에 따라 上命下服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윤리가 성립되게 되었다(한국사연구회 편, 1990: 280).

하지만 이러한 성리학적 사회질서는 이전 사회의 사상체계와는 완전히 판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수용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의식의 변화 속도가 갖는 후진성으로 인해 이전 사회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층의 미신적 불교는 의연히 계속 신봉되면서 축복, 축수, 忌日 追福 등의 법회는 끊임없이 개최되었으며, 그와 아울러 유교윤리와 모순되지 않는 경전인 [부모은중경], [우란분경]이 중시되었다. 이 경전들은 인도나 서역어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중국어로 중국인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경전으로, 유교와 타협하면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한 불교의 효개념을 홍보하는 위경이었다(미치히타로슈, 1994: 87).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고자 [삼강행실도], [국조오례의] 등 禮書를 간행하여 일종의 국민윤리로서 시행, 권장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일반 대중들의 의식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윤사순, 1986: 195). 그 결과 家廟를 권장하면서 [주자가례]에 따라 통과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여전히 불사에서 火葬을 하는 풍속은 지속되었고,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속, 제사에서 아들, 딸 구분없이 균분상속과 유희봉사가 지속되었다(최재석, 1983: 530-542).

이처럼 17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사회전반적으로 성리학적 색채보다는 불교적인 색채가 잔존해 있었으며, 농업생산력의 수준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비해 보다 수평적인 상태에서 호혜성 및 공정성이 실현되었고, 기혼자녀세대의 일방적인 효를 강조하는 성리학적 효규범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인연사상에 의하여 관계 규범도 가족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뻗어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은 불교신념에 바탕을 둔 관계 규범과 상호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일제시대까지의 효규범에 대한 고찰

성리학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린 시기는 선진적인 강남농법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로, 사회전체의 富는 크게 증대된 시기였으나 그 획득과 분배의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개의 입장이 대립하여 정치적으로 심한 파탄을 일으키던 시기였다(이태진, 1990: 81). 이때 성리학은 진보적 입장에 의해 받아들여져 새로운 사회윤리 체계로서의 터전을 공고히 다져갔는데, 진보적 입장은 유교적 도덕윤리를 함양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노력은 鄕村禮, 香飲酒禮 보급운동과 향약 보급운동으로 이루어졌으며(이태진, 1990: 86), 가족관계나 향촌사회의 윤리문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신서인 [소학]을 성리학적 윤리 정립의 일환으로 간행, 보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7세기 중엽 이후의 부모세대, 특히 父는 농업경제사회에서 유일한 생존 토대가 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가족내 교환관계에서 자원을 가장 많이 소유한 존재가 된다. 반면 기혼자녀세대의 경우 독립된 생존 토대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父의 생존기반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는 권력과 복종의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기혼자녀세대의 경우 父가 사망하게 되면 혈연에 의거하여 토지를 자신들이 물려받게 된다는 장기적인 관계 산출이 예상되므로, 부모와의 관계는 즉각적 호혜성 및 공정성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신뢰와 헌신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에 대한 연구(고영복, 1983)에서도 효가 인간 행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농경사회 배경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조선시대의 노인부양사업에 대한 연구(김태현, 1975)에서도 조선시대에는 노부모 보호를 촉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조건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규범으로 삼는 전통사회는 바로 이 시기로, 농업생산력이 낮은 이전 사회와 달리 이 시기에 오면 생존의 토대가 되는 토지를 매개로 기혼자녀세대의 의무가 강조되는 성리학적 효규범이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는 관계 규범으로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장자는 衆子 몫의 1/5을 봉사조로 더 받게되기 때문에 지차남보다 더 엄격한 효행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성리학적 효규범이 하층에서도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를 제재하는 규범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Adams(1980: 49)도 중국의 가족을 역사적으로 고찰 하면서 전통사회에서도 하층의 경우에는 상층의 가족처럼 父의 영향력이 강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듯이, 이 당시에 적용된 성리학적 효규범도 계층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하층의 경우 부모세대가 토지나 농경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되는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혼자녀세대에게 토지를 매개로한 상층의 성리학적 효규범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에 위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층의 경우 농업생산력이 낮은 이전사회에서처럼 기혼자녀세대의 일방적 의무만을 강조하는 효규범이 실현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후 16세기 말과 17세기 전기에 발발한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分에 입각한 차별적 성리학 윤리는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18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상품, 화폐경제가 진전되었고, 수공업 및 광업이 발달되면서 농민층과 양반층 내에서도 경제적 계층분화가 나타났다(이태진, 1990: 144). 이에 따라 19세기에는 종래의 신분적 지배-예속 관계와 사농공상의 직분적 사회구성 위에서 기능하고 있었던 성리학 일변도의 사상체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변태섭, 1991: 362-363),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위기는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더 이상 토지만이 생존의 토대가 되지 않고 화폐획득이라는 생존토대의 대안이 마련되면서, 이전의 토지를 매개로 이루어진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권력-복종의 관계는 변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배층은 당시 변화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서 무너져가는 신분계층의 권위를 성리학적 사회질서 속에서 유지하고자 문중조직을 강화하고 족보를 강조하며 제사의식 및 그 절차에 집착하였으며, 忠, 孝, 烈에 대한 교훈서를 각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였다(조혜정, 1986).

결국 이러한 지배층의 경직된 노력은 피지배층으로 하여금 반봉건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며(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198), 이후 갑오개혁에까지 이르렀으나 일부 富를 통해 지위를 획득한 상민층은 허위의식 속에서 계층상승의 표시로 과도하게 이전의 윤리를 내면화하면서 사회의 병폐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가치관 및 윤리체계에서의 새로운 시도, 즉 실학운

동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일부 부유한 상민층의 허위의식과 맞물려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 자리잡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지배층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무너져가는 사회질서를 더 강화하여 이념 차원에서 성리학적 효규범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지배층의 움직임은 그 후 정치적으로 민족국가를 수립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를 지향하던 식민지 이전 시기에서도 계속되었으나 농경체계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었던 성리학은 더 이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이러한 사상적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으로 종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종교운동의 결과로 서구의 인권주의 사상과 남녀평등 사상이 도입되었다(강만길, 1984: 12).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 교육의 제1보로 학교령(1905)을 제정하여 '모범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는데, 反日 감정을 막기 위하여 군신일체로서의 충효를 본으로 하는 유교적, 봉건적 가치관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 원리로 하는 모범교육의 일환으로 가부장적 봉건도덕을 강조하는 修身과목을 중요시 하였으며(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285-286), 봉건적인 일본식의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치에 도움이 되는 봉건적인 우리나라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등 변화된 사회경제체제와 유리되는 봉건적 사회질서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 농경사회의 가부장제 가족제도 하의 성리학적 효규범은 변화하는 사회상과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면서도 지속되어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 규범으로서의 현실성을 상실하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4. 광복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효규범에 대한 고찰

광복과 함께 시작된 미군정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식민지 통치기구가 남한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과거 식민지 통치기구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357)하는 한편 이질적인 서구문화를 도입시켜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서구 가치관간 모순

된 양극화 현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생활의 중심이 되는 가치관의 혼란만 가져왔으며, 정책입안에 있어서도 문제해결을 직시하는 근대사회의 합리주의 보다는 전통사상의 변칙적 도용만 가져왔다. 그리고 대중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거 양반계급의 유교적 가족규범이 사회적으로 학습되기 시작하여 전통적 가족규범의 계층적 보편화를 가지고 왔다(장경섭, 1994: 54). 그 후 계속 진행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忠孝라는 전근대적 이념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규범과 실제간 지체된 양상은 현대에 올수록 효를 중심으로 하는 오륜의 원리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가족주의가치가 우리의 전통적 미덕으로 강조되면서 사회구조적 변화의 서구지향성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공식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는 실제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옥선화, 1989).

결국 이렇게 계속되어온 성리학적 효규범은 더 이상 기혼자녀세대가 부모세대와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호혜성 및 공정성을 지켜주는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특히 토지가 자산이 되었던 농업경제체제와는 달리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이 자산이 되는 산업사회에서는 부모세대의 경험이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는 교환자원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현대 법치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자녀가 성년에 달하면 부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법률상으로는 부모세대나 기혼자녀세대 모두 성인으로 규정하는 등 성리학적 효규범과 상이한 평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법 친족편에서는 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의무보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는 친권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여 민법 913조에서는 '친권자는子を 보호하고 教養할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국가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부양관계에 있어서도 '성년자라면 완전히 사회활동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부조의 부양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일방적이거나 제

1차적 본질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박병호, 1995: 192). 즉 부모, 조부모와 자녀, 손자녀간의 부양은 상호적인 것으로, 부모-조부모가 자기의 資力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과해지며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협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민법 974-977조)으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부양을 호혜적인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전사회에서 강한 부모에 대한 기혼자녀세대의 의무를 호혜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세대가 자신의 資力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세대가 부양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세대는 자신의 생활수단을 제외한 여력이 있어야만 부양할 의무가 있는 등 기혼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은 부부간의 부양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인 생활유지 의무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생활보조 의무(어인의, 1995: 20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정해진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 원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에 비해 이차적인 것으로, 핵가족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주기상에서 볼 때 기혼자녀세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과 부모에 대한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담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는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와 장한 아버지, 전통 모범가정 그리고 노인복지 기여자들을 발굴하여, 매년 5월8일 어버이날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포상하고 있다. 이들 포상대상자 중 효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만 30세 이상으로,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덕행으로 집안을 화목하게 하며, 부모와 동일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없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자”(중앙일보, 1994, 5.7)라고 선정하여 동거를 효규범의 기본 전제로 강조하

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반수의 부모세대가 기혼자녀세대와 별거하고 있는 실정⁶⁾이며, 이 경우에도 노인편에서 오히려 동일한 가구 내에서 함께 사는 형태보다 근거리에서 떨어져서 사는 형태를 더 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김태현, 1994: 147)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국가정책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경상북도의 경우 효행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상을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현장검증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만큼 심각한 효자, 효부의 기근을 맞고 있으며, 실제 수상자에 비해 추천자가 적어 가정복지국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중앙일보, 1994, 5.7)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효행상을 받은 817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현대 한국인의 효행을 살펴본 연구(성규탁, 1989)를 보면, 효행을 받은 대다수의 부모들은 노령으로 허약하고 건강 및 사회적 문제가 있어 자녀들의 끊임없는 헌신적인 보살핌과 서비스를 필요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을 돌보면서 효행을 한 817명 중 67%는 여성이며, 대다수인 72%가 생활정도가 낮았고, 일방적으로 부모세대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평균 12년을 효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국가가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및 노인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실제 부양을 받는 의존적인 입장에 있는 부모세대가 더 민감하게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의 원리를 인식하고서 점차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세대가 중요한 유권자가 되면서 정부도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고령자 취업을 알선하고 장기적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종이 확대되도록 기업의 노동조건과 임금구조를 개선하며, ‘실버산업’에 대해 금융

6) 1992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결과 제1차 중간보고(김태현, 1994: 147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사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53.6%로 나타났다.

세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발표(한겨레신문, 1995, 2.20)하였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효규범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부양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부모세대가 기혼자녀세대와 상호작용할 때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개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과는 일관되지 않게 부모살해 같은 패륜사건이 발생하자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95년 7월부터 공무원들에게 부모, 처부모(시부모)의 생일에 하루의 효친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책은 부모-기혼자녀세대간 상호작용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의도가 현대 사회문제의 원인을 효규범의 부재로 단일 원인화시켜 농경사회의 성리학적 효규범을 고취하여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또한 사회문제를 가정내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면책성의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변화의 추이를 간과하고서 17세기 중엽이후부터 불과 몇백년 동안 상층에서 지켜졌던 효규범을 현재의 산업사회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의 질을 악화시켜 두 세대 모두를 소외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7세기 중엽 이전에는 불교가 사회전반적인 가치로 작용하며, 농업생산력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효규범은 기혼자녀세대의 일방적인 의무로 유지되는 규범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즉 이 시기의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는 조선 중기 이후의 수직적인 관계에 비해 수평적이며, 인연사상에 입각해서 가족내에만 한정되는 윤리보다 사회전반으로 뻗어가는 윤리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7세기 중엽에는 농업생산력 수준이 향상되면서 상층의 기혼자녀세대의 경우父의 생존기반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기혼자녀세대의 일방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효규범도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고서 형성될 수 있었는데, 이 시기가 오늘날 우리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규범으로 삼는 전통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세대가 토지나 농경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되는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하층의 경우에도 상층과 동일한 효규범이 부모-기혼자녀세대애 작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혼란과 18세기 이후에 가속화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19세기에 접어들면 분에 입각한 성리학적 효규범은 사회체제를 규제하는 규범이 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지배층은 당시 변화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서 성리학의 형식주의적 객관화인 예학에 집착하였다. 이후 이 효규범은 광복 이후 대중교육을 통해 전체 계층에 보편화되었으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 충효 이데올로기로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리학적 효규범은 공식적으로 계속 규범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오늘날 평등주의가 강조되며, 부모부양보다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관계 규범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오늘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 조건 속에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현실성을 갖는 관계 규범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7세기 중엽부터 불과 몇백년 동안에 현실성을 가졌던 효규범을 미덕으로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전통사회의 농경체제와는 상이한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성리학적 효규범과 상이한 평등주의를 법으로 강조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보다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을 제1차적 부양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기혼자녀세대에게 이중부담을 가져다 주어 부모-기혼자녀세대간 호혜성 및 공정성이 유

지되기 힘들며, 개인이 그러한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기혼자녀세대는 현실생활 속에서 전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관계이며, 오늘날에는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념적으로 관계 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관계 규범을 교육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부모 부양을 가족내 부양으로 규정짓는 정책의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앞서 본문에서 밝혔듯이 법률상으로는 부모세대나 기혼자녀세대 모두 성인으로 규정하면서 부부간의 부양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인 생활유지 의무와는 차이를 보이는 생활보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부모 부양문제는 가족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모를 모시지않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노인을 돌보는 개인과 사회단체가 소송을 통해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1997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한국일보, 1996, 8.20). 이러한 법과 정책의 불일치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은 부모 부양을 가족내 문제로 귀결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화하여, 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사회 상황에 맞는 부모-기혼자녀세대간 호혜성 및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 규범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또한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도 서로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모-기혼자녀세대간 수직적 관계를 전제하면서 기혼자녀세대의 의무와 복종을 강조하는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불과 몇백년 동안 현실성을

가졌던 효규범을 오늘날 강조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오히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호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는 개별 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관계에까지 뻗어가는 관계 규범을 강조한 17세기 중엽 이전의 효규범이 오늘날 생활 속에서 의미를 갖고 수용될 수 있는 전통이라고 제안해 본다. 특히 이러한 규범은 성인자녀세대의 결혼비용 및 분가비용으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중년기의 중산층 부모세대에게 더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시기는 일생을 통하여 볼 때 소비의 흐름은 대체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소득의 흐름은 점차 상승하여 퇴직 직전까지 소득이 절정에 이르는 때(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71)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와 함께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많은 이 시기에 노후준비를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중산층 부모세대는 자신의 노후에 대한 저축계획 보다는 자녀의 결혼비용 및 분가비용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하여 노년기의 독립적이고 안락한 생활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전반적으로 평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기혼자녀세대의 의존성만 강화하여 이후 관계의 호혜성 및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모-기혼자녀세대도 서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별가족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전반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열린 관계 규범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자신의 사유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일부의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몇가지 제안점을 고려하면서 이제는 농경사회의 효규범만을 전통의 미덕으로 강조하는 편협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오늘의 사회적 배경에 맞는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 규범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아울러 전체 삶에서 노년기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인식하고서 노년기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만길, 1984, [한국근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2) 고영복, 1983,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3) 김익기, 1995, “한국의 인구변천과 노령화”, [동서양의 노령화],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4) 김모란, 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김미겸, 임종권, 1982, “인구와 노인”, [한국인구보건학 논집] 25: 124-132.
- 6) 김태현, 1975, “조선시대의 노인부양사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_____, 1994, [노년학], 서울: 하우.
- 9) 미치히타로슈, 목정배 옮김, 1994, [불교의 효, 유교의 효], 서울: 불교시대사.
- 10) 박병호, 1976,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2.
- 11) _____, 1995, “효윤리의 범규범화와 그 계승”, [효사상과 미래사회], 효사상 국제학술대회: 179-198.
- 12) 변태섭, 1991, [한국사통론], 서울: 삼영사.
- 13) 성규탁, 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가족중심적 부모부양의 이념 및 실천”, [한국노년학] 9: 28-43.
- 14) 성미애, 1991, “부모세대의 피부양만족도와 기혼 자녀세대의 부모부양부담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손선경, 임정빈, 1985,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 107-125.
- 16) 어인의, 1995, “한국민법상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효사상과 미래사회], 효사상 국제학술대회: 201-214.
- 17)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윤사순, 1986, “한국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서울: 도서출판 정우.
- 19) 윤종주, 1983,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 155-179.
- 20) 이광규, 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서울: 민음사.
- 21) 이태진, 1986, [한국사회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22) _____, 1990, [조선유교사회사론], 서울: 지식산업사.
- 23) 일연 지음, 이민수 옮김, 1994,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 24) 임춘희, 1987, “분거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장경섭, 1992, “핵가족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5.
- 26) _____, 1994, “한국가족의 이념과 실제”, [철학과 현실],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 27)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한국인의 장기생활설계 연구].
- 28) 조 형, 1996, “법적 양성평등과 성의 정치: 여성관련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1): 7-44.
- 29) 조혜정, 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 2: 147-158.
- 30) 중앙일보, 1994, 5.7
- 31) 최병헌, 1986, “한국불교의 전개”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서울: 도서출판 정우.
- 32)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33) 한겨레신문, 1995, 2.20.
- 3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한국노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갤럽 연구소.
- 35) 한국경제사학회, 1991, [한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을유문화사.
- 36) 한국사연구회 편, 1990, [한국사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 37) 한국역사연구회 편, 1989, [한국사강의], 서울: 한올아카데미.
- 38) 한국일보, 1996, 8.20.
- 39) Adams, B.N., 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 40) Finch, J., 1989, [Family Obligation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 41) Johnson, C.L., 1988, "Interdependence, Reciprocity and Indebtedness: An Analysis of Japanese American Kinship Relations", [J of Gerontology] 43: 114-120
- 40) Sabatelli, R.M & C.L Shehan, 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NY: Plenum Press.